

(부 대 /기 관 명)

제 호 . . .

징 계 처 분 서

소 속 :

계 급 : 군 번 :

성 명 :

위 사람을 에 처함.

1. 비행건명 :

2. 비행사실 :

3. 처분이유 :

끝.

직 위 계 급 성 명 (직 인)

이 처분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「군인사법」 제60조에 따라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.